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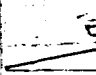



자 재 종 목	기 안 처	관 재 과 원 유 호	전 화 번 호	201	근 거 서 류 접 수 일 자
처 분 담 임	관 재 과 장	재 무 국 장	재 부 시 장	시 장	
					
관 계 관 서 명					
기 안 년 월 일	1964. 4. 22	시 행 년 월 일	1964. 4. 23	보 존 년 한	
분 류 구 분 번호	서 재 과 1264.2	전 체 부 계	합 계	경 서 기 장	
결 수 환	유 산 조	발 산			
제 목	시 유 건 물 (<u>철거조건</u>)매각처분				
1. 다음표시건물은 도로사업소및역청공장건물모서 동매적 상어건물을신축하게되므로 다음각각이철거매각조처합니다.					
가. 재산의표시					
(1) 동대문구용두동-63 세면벽돌화중 75.52평					
(2) " 송인동55-2.25 24평. 9평					
나. 매각방법 입찰경정입찰					
다. 공고방법 법정공고한을계시관여계시함.					
라. 공고기간 1964.4.23.부터5일간					
마. 입찰일시 1964.4.29. 10.00					
바. 세입 과목 (관)재산수입 (항)불용재산매각대 금					

제 5호
14호
5월 14일

37
法
制
保
確
總
務
課

서울특별시공고제 33/ 고

시유건물(철거조건)입찰공고

1. 물건 의표시 (1)서울특별시종대문구용두동663 건물 75.52평
(2) " " 송현동55-2.25 " 24평및 9평
2. 입찰일시 서기1964년 4월 29 일 10시
3.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
4.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관재과
5. 입찰등록 서기1964년 4월 27 일 17 시까지
6.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1%이상 의현금이나시중금융기관보증수표를 납부한다.
7. 철거및 대금납부. 낙찰자는낙찰일로부터 3월이내에대금납부 와동시에 시세.국세납세필증을첨부하고 10 일이내에완전철거 하여정지불하여야하며 이를위약하였 을때에는계약보증금은 하자보증금으로도충당하겠 음.

~~6. 경문명도 철거할경문이명도해대하여는배수가의책임으로한다~~

서기1964년 4월 29 일

서울특별시 장 윤 치 영

22

468-38